

#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02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 2 | 고성군수        |
| 나. 회부일자 : 2001. 7. 2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01. 7. 6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 2. 제안이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이용자의 범위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으로 함.(안 제2조)
- 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7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휠체어택시」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간 경남도에서 창원에서 시범 운행한 결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 2001년도에는 우선 전 시지역에 확대실시하고 군지역에서는 2001년이후부터 시행 검토하되 가급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휠체어택시제도 확대 시행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음.

- 본 제도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은 물론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병원진료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 군에서 직접 운영할 시 전담운전기사와 보조원의 확보문제나 위탁 운영 할 시 년간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인지와 지역여건상 선량한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비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파급 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참고로 고성군은 복지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2001년 5월 4일 이스타나 10인승 승합택시(시가 23,110천원)를 무상 양여 받아 보관 중에 있으며, 휠체어택시운영조례는 도내 10개 시에서 제정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운행은 현재 창원 3대, 마산 2대, 진주·진해·통영·밀양에서 각 1대씩 운행하고 있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별표 1의 이용 요금표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마산시의 경우 현행 택시요금 체계와 유사하게 2km까지는 1,300원, 10km이내 1시간 30분 미만은 1,500원 등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책정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는 요금 체계를 전환해 볼 의향은 없는지
- 답 : 휠체어 택시요금 체계를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책정하였으며, 도내 전역에서 시행하는 현행 이용 요금표대로 운용해 나가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나가겠음.
- 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와 거동불편 노인의 구분방법은
- 답 :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것임.
- 문 : 휠체어택시 운영방식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직영이나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답 : 장애인과 노약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군에서 직접 운영할 시에는 년간 2,500만원정도 소요되며, 민간단체 위탁운영 시는 타시의 사례로 보아 년간 1,000만원정도 위탁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문 : 상담보조원의 활용방안과 이용방법은
- 답 : 상담보조원은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휠체어 택시를 이용코자 할 때는 1주일 전에 예약하여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1. 7.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